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39
----------	-------

발의연월일 : 2026. 4. 2.

발 의 자 : 조지연·김장겸·김은혜
최수진·박성민·안철수
김승수·박덕흠·배준영
박준태 의원(10인)

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그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사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진실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보상이 병행되어야 하나, ‘과거사정리법’은 보상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범위·절차 등은 별도의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위한 개별 입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

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심의·결정하고자 함(안 제3조).

나.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에는 조세를 면제함(안 제12조).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실질적인 보상 등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실규명결정 사건”이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을 말한다.

2.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3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다.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된 사람

3. “유족”이란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 ①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

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보상 원칙)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2.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 및 장애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 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②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의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8조(결정서정보 송달)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보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심의)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제7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제8조에 따라 결정서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① 제8조에 따라 결정서정보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2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90일(행방불명의 경우에는 120일)이 지나도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正本(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5조(보상금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 액수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3.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준수 의무)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2.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

제21조(과태료) 제20조를 위반하여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